

부 산 가 정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3드단●●●● 인지등
원 고 한AA

피 고 김BB

사 건 본 인 한CC

변 론 종 결 2014. 9. 17.

판 결 선 고 2014. 10. 22.

주 문

1.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.
2.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

3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,9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
 갖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4. 10.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
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

4. 피고는 제3의 나.항 기재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
 1개월 내에 현금으로 5,000만 원을 원고를 위하여 공탁할 것을 명한다.

5. 소송비용 중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6.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,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,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,200만 원 및 이에 대
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갖는 날까지 연 5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장래 양
육비로 2013. 4.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지청구에 관한 판단

갑 제1, 2, 3, 1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
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유전자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
는 2011. 3. 22.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와의 사이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원고의
혼외자로 출생신고한 사실, 유전자감정결과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

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므로, 원고의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.

2.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를 지정

[판단근거] 사건본인과 피고의 관계,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경위,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, 양육 상황 및 환경, 사건본인의 나이, 성별 등 참작.

3.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양육비

(1) 과거 양육비 :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출생일인 2011. 3. 22.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2011. 4.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인 2014. 9.까지 42개월 간 월 70만 원씩 합계 2,9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민법 소정의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(2) 장래 양육비 :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선고일이 속하는 달인 2014. 10.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[판단근거] 사건본인의 연령, 사건본인의 양육 및 교육에 향후 상당한 비용이 지출 될 것으로 보이는 점,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능력,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, 장래 양육비는 분할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, 서울가정법원이 제정하여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 여러 사정 참작.

(3) 장래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(직권판단) : 현금 5,000만 원(이 판

결확정일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함)

[판단근거] 피고는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,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가 상당하나, 지금까지의 피고의 태도로 보아 장래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 참작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원고와 피고가 중국에서 동업으로 술집을 운영하기로 하고,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,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는데, 원고는 위 돈을 원고가 가지는 대신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, 원고의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, 양육비 청구, 담보제공명령(직권)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호철